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제 지도자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면제 제도 운영상 국제대회 간,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간 형평을 기하며, 자격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협의예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별표 3 제1호,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요건란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를 각각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나목의 요건란 중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대상란 중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

함한다)”를 “가.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최고 등급의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자격검정: 해당 없음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별표 3 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최고 등급을 제외한 상위 등급의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별표 3 제3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직무수행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고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

별표 3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직무수행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고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 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4.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	5. (현행 제4호와 같음)

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 람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 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 는 사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 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연 락 처	(044) 203 - 3194